

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로즈테일오피스텔 1828호) / Tel 02-567-1307/ Fax 02-567-1337

www.assi.or.kr E-Mail : assi1307@naver.com 담당 : 박용복국장 (H·P) 010-8688-5619

문서번호 시험 2019 - 102호

시행일자 2019. 4. 3.

수신 서울특별시

참조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재	
수	번호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 목 정밀안전진단 용역 총액계약 부당특약조건 삭제 요청

1.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시에서는

(1) 총액계약의 사후정산문제에 관련하여 ‘확정(총액)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정산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찰공고 및 계약 특수조건 등에 정산항목을 명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산이 가능하다’(공문 재무과-14328(2019.3.19.)고 밝힌바 있으며,

(2) 2019년 3월 22일자 보도자료에서 「서울시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개선 대책」에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막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3. (1)그런데 귀 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서는 약 10년 전부터 표준적인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서를 정하고 이를 2018년도에 발주한 지하철 지상 및 지하 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입찰 및 계약에 적용하고 있으며 과업내용서 제1장 9. 과업의 특수조건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 본과업의 외업인원(기술자+보조인부)은 「정액적산방식」으로 작성되었으나, 과업이 완료된 후에는 「실투입 인력정산방식」으로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정산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외업인력을 현저히 절감, 발주기관에서 기술소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를 일자별로 제출

나. 외업인력정산은 고급기술자 인원으로 환산하여 정산합니다.

(2) 이 특수조건을 이유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현장감독자들은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기술자 및 보조인부의 인원을 모두 참여할 것을 감독하고 있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산감액 한다고 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회사')들은 그 인원을 맞추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3)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으며 내용에 있어서는 정부계약의 원칙인 신의성실원칙과 부당특약 금지의 원칙(지방계약법 제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4) '공사'의 정밀안전진단 계약은 국토교통부의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고 총액에 의하여 입찰하는 확정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 작성시에는 국토교통부의 대가기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예정가격을 정하면서 외업인원(기술자+보조인부)은 「정액적산방식」으로 작성하여 총액으로 입찰에 부쳐 계약이 확정된 것이 명백하고 이 계약은 입찰공고나 낙찰당시 입찰대상이 되는 예정가격 금액의 비목이 확정되지 않아 사후에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의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계약이 아님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4. 그런데도 '공사'에서는 우리 협회가 위의 시정요구(시협 2019-90호, 2019.3.7.)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답변과 회신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기관인 귀 시에서는 '공사'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벗어나 부당하게 요구하는 위 특수조건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오니 서울시민의 안전과 용역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영세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정을 헤아려주시어 청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 : (1) 정액적산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용역 용역비 부당감액 중지 요청 공문 사본 1부. (끝).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